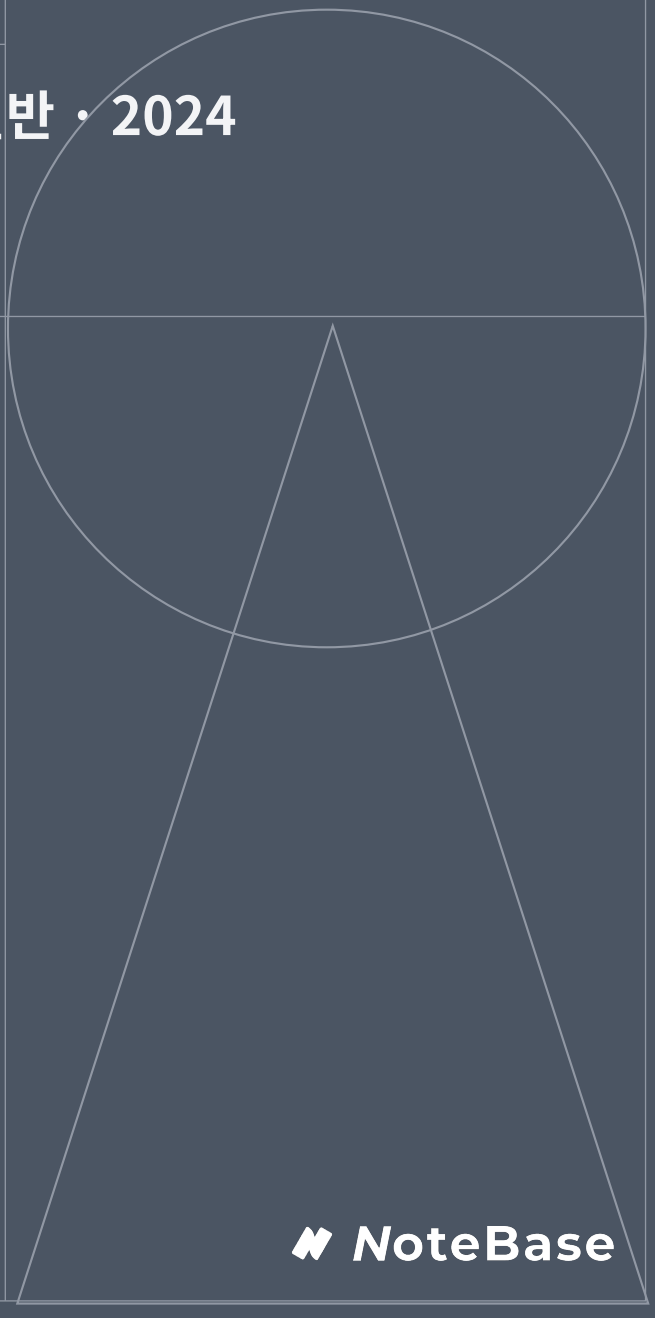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4

공무원/계리직/9급 · 우편일반 · 2024

1. <보기>에서 서신독점 예외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타인에게 보내는 중량 300g의 서신
ㄴ.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송장
ㄷ.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
ㄹ.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ㅁ.「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서신독점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서신 자체에서 제외되는 물건과 중량·요금에 따라 서신송달업이 허용되는 경우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서신독점 = 원칙적으로 국가 외의 자가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을 업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서신 제외 대상은 애초에 법령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구분

「우편법」 제2조제3항에 따르면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서신송달의 대가가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 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이 예외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는 서신 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ㄴ, ㄹ, ㅁ이 서신독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ㄴ은 봉하지 아니한 송장이므로 서신 제외 대상이지만, ㄱ의 300그램 서신은 350그램을 넘지 않아 중량 기준 예외가 아니다. 틀린 표현: ㄱ, ㄴ → 올바른 표현: ㄴ, ㄹ, ㅁ이다.
② X — ㄱ은 350그램 초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ㄷ의 국가기관 발송 등기취급 서신은 중량·요금에 따른 독점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틀린 표현: ㄱ, ㄷ → 올바른 표현: ㄴ, ㄹ, ㅁ이다.
③ O — ㄴ은 봉하지 아니한 송장, ㅁ은 법령상 신용카드이므로 서신 제외 대상이고, ㄹ은 기본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으므로 송달 허용 기준에 해당한다.
④ X — ㄹ과 ㅁ은 맞지만 ㄷ은 독점 예외 대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 ㄷ, ㄹ, ㅁ → 올바른 표현: ㄴ, ㄹ, ㅁ이다.

오답 포인트

ㄱ의 300그램을 기준보다 무겁다고만 보고 고르거나, ㄷ의 등기취급을 일반적인 예외로 착각하기 쉽다. 중량 기준은 350그램을 '넘는' 경우이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발송 등기취급 서신은 오히려 그 예외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물건이 법령상 서신 제외 대상인지 확인한다. 서신이라면 350그램 초과 또는 기본통상우편요금 10배 초과인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발송 등기취급 서신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봉하지 않은 송장·신용카드는 서신 제외, 서신은 350그램 초과 또는 요금 10배 초과가 독점 예외,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송 등기는 예외에서 제외된다.

NoteBase

2. 준등기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은 200g 이하의 국내 통상우편물이며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② 반송 시 등기 우편물로 처리되어 반송 수수료는 등기통상우편 요금이 적용된다.

③ 접수 시부터 수취함 투함까지 배달 결과에 대한 종적조회가 가능하다.

④ 배달완료된 후 발생한 손실·분실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준등기 우편물의 접수 대상, 요금, 배달기한, 종적조회 및 손해배상 범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준등기가 접수부터 배달 전 단계까지는 기록취급되지만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제도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준등기 = 국내 통상우편물을 접수한 때부터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비대면 배달 서비스이다.

핵심 구분

현행 우편업무 규정에 따르면 준등기우편물은 200그램까지 단일요금으로 접수하며,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한다. 접수·운송 과정은 기록취급하지만 수취인의 수령 사실은 확인하지 않고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배달이 완료된다. 따라서 준등기에는 일반 등기통상우편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등기 단일요금을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준등기의 대상은 200그램 이하의 국내 통상우편물이다.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다.

② X
준등기는 접수·운송 단계에서 기록취급되더라도 일반 등기통상우편과 요금 체계가 같지 않다.
틀린 표현: '발송 수수료는 등기통상우편 요금이 적용된다.'
올바른 표현: '준등기우편물에는 중량 200그램까지 준등기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③ O
준등기우편물은 접수부터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할 때까지 취급과정과 배달결과가 전산에 등록되므로 종적조회가 가능하다.

④ O
준등기우편물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하면 배달이 완료된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손실·분실은 우편 취급 중 발생한 손해가 아니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접수·운송은 등기처럼 기록한다'는 특징을 '일반 등기통상우편 요금을 적용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준등기는 기록취급 방식의 일부가 등기와 비슷할 뿐, 200그램까지 별도의 단일요금이 적용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준등기는 '200그램 이하·단일요금·접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우편수취함 투함으로 완료'의 네 기준으로 판단한다. 접수부터 배달 완료까지는 조회와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수취함 투함으로 배달이 완료된 뒤의 손실은 배상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준등기: 200그램까지 단일요금, 3일 이내, 수취함 투함까지 기록한다.

NoteBase

3. 인터넷 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이용대상이 아니다.

②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구매 후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하여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인터넷 우표의 이용 대상, 사용 방법, 교환 및 구매 취소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터넷 우표는 인터넷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결제한 뒤 이용자가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는 우표이다. 일반통상우편물과 등기통상우편물에 이용하며,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수취인 주소와 함께 사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은 인터넷 우표의 이용 대상이 아니다. 인터넷 우표는 일반통상과 등기통상에 이용한다.

② O

정가 판매한 인터넷 우표는 우표류 교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취인 주소가 기록되어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점도 그 이유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수취인 주소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이다. 올바르게는 인터넷 우표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취인 주소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④ O

구매한 뒤 한 장도 출력하지 않은 인터넷 우표에 한정하여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일부라도 출력했다면 구매 취소할 수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말에 끌리면 단독 사용도 가능하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직접 출력하게 한 것과 별개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수취인 주소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터넷 우표 문항에서는 대상은 일반·등기통상, 사용은 수취인 주소와 함께, 교환은 불가, 구매 취소는 미출력분만 가능하다는 네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터넷 우표는 통상우편용이며, 주소와 함께 사용하고, 미출력분만 취소할 수 있다.

NoteBase

4. 내용증명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용문서의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봉입할 수 없다.

②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다.

③ 발송인은 반드시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용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의 글자를 훼손하지 않도록 발송인의 인장으로 간인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작성, 제출 통수, 봉입 및 간인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원본·등본의 동일성, 등본 제출의 원칙과 예외, 우체국의 증명 절차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내용증명 =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이다.
등본 = 내용문서 원본을 복사하여 원본과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이다.
간인 = 여러 장으로 된 하나의 문서가 서로 이어진 문서임을 표시하는 절차이다.

핵심 구분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대조·증명한 내용문서 원본을 봉입하는 방식이므로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을 함께 넣을 수 없다. 내용문서는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수수료 계산에서는 양면을 2매로 본다. 원칙적으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되, 발송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으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다. 원본이나 등본이 2매 이상이면 우체국이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한다. 이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8조, 제52조 및 제53조의 내용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내용문서를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그 원본과 관계없는 물건은 함께 봉입할 수 없다.

② X — 내용문서의 원본과 등본은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양면에 기재한 것은 2매로 본다.
틀린 표현: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없다'
올바른 표현: '양면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양면에 기재한 경우 수수료 계산상 2매로 본다.'

③ X — 원본 1통과 등본 2통 제출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으므로 '반드시'가 틀렸다. 발송인에게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하지 않으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다.
틀린 표현: '반드시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올바른 표현: '원칙적으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제출하되, 발송인에게 등본이 필요하지 않으면 등본 1통만 제출할 수 있다.'

④ X — 2매 이상인 원본이나 등본의 합철 부분에는 발송인의 인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이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한다.
틀린 표현: '발송인의 인장으로 간인한다'
올바른 표현: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반드시'와 ④의 '발송인의 인장'이 함정이다. 등본 2통 제출에는 발송인용 등본이 불필요한 경우의 예외가 있고, 여러 장을 잇는 간인은 발송인이 임의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우체국의 증명 절차이다. 또한 ②는 양면 작성의 허용 여부와 수수료상 매수 계산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용증명 문항에서는 먼저 원본과 등본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원칙인지 예외인지', '발송인이 하는 일인지 우체국이 하는 일인지', '작성 가능 여부인지 수수료 계산 방법인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무관한 물건은 봉입 불가, 양면은 작성 가능·2매 계산, 등본 2통은 원칙·1통은 예외, 간인은 우체국 방식이다.

NoteBase

5.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달 결과는 공급업체에서 직접 입력한다.

② 꽃송이의 부족으로 교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품 교환 조치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상품을 발송할 때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함께 보내야 한다.

④ 배달 중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접수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에서 공급업체가 담당하는 배달 결과 입력, 태그 동봉, 상품 교환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체국 꽃배달 서비스는 공급업체가 주문에 맞추어 상품을 제작·배달하고 배달 결과를 직접 입력하는 서비스이다.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배달 중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그 공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하고 교환이나 환불 요구에 즉시 보상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배달 결과는 실제 배달을 수행한 공급업체가 직접 입력한다.

② O
상품의 훼손이나 꽃송이 부족 등 상품에 결함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면 상품 교환 조치를 한다.

③ O
공급업체는 상품을 발송할 때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반드시 함께 보내야 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접수우체국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이다.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배달 중 상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에는 접수우체국이 아니라 잘못을 일으킨 공급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면 즉시 보상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우체국을 통해 접수한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비용 부담 주체를 접수우체국으로 바꾸었다. 결함의 원인이 공급업체의 잘못이면 비용 부담 주체도 공급업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꽃배달 서비스의 역할을 '공급업체가 제작·배달·배달 결과 입력·태그 동봉을 담당한다'로 묶고, 배달 중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생긴 결함은 공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꽃배달은 공급업체가 배달 결과 입력과 태그 동봉을 담당하고, 공급업체 과실의 비용도 공급업체가 부담한다.

NoteBase

6. 나만의 우표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1종이 기본이며 홍보형 및 시트형은 기본 종수(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전국의 우체국(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제외), 인터넷우체국, 우체국 모바일 앱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③ 지적재산권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2년 동안 보관한다.

④ 접수담당자는 신청서에 우편날짜도장으로 날인하여 원본은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나만의 우표의 유형별 이미지 제공 기준, 접수처, 권리확인 서류와 신청서의 보관기간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기본 제공 이미지 수와 접수처의 포함 범위, 보관기간을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나만의 우표 = 개인의 사진이나 기업의 로고·광고 등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 제작하는 고객맞춤형 우표이다.
사용동의서 = 타인의 초상이나 저작물 등을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권리자가 확인한 서류이다.

핵심 구분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1종이 기본이고, 홍보형과 시트형은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나만의 우표는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타인의 초상이나 저작물 등을 사용하면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 신청서의 우체국 보관기간은 1년이다. 이는 현행 「우편업무 규정」의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 적용 특례와 나만의 우표 접수 및 신청서 처리 규정에 따른 구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기본형은 고객 이미지 1종이 기본이고, 홍보형 및 시트형은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하므로 옳다.

② X
-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도 나만의 우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전국의 우체국(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제외)
- 올바른 표현: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 및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③ X
-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나 사용동의서 등을 신청 고객에게 제출받는 것은 맞지만, 보관기간을 2년으로 본 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2년 동안 보관한다.
- 올바른 표현: 관련 신청 서류의 우체국 보관기간은 1년이다.

④ X
- 접수담당자가 신청서에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용 신청서를 보관하지만 그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틀린 표현: 원본은 우체국에 3년 동안 보관한다.
- 올바른 표현: 우체국용 신청서는 우체국에서 1년 동안 보관한다.

오답 포인트

②의 괄호 속 '제외'를 지나치거나, ③과 ④의 보관기간을 다른 우편서류의 기간과 혼동하기 쉽다. 특히 사용허가서 제출 의무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③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면 안 되며, 뒤의 '2년'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나만의 우표 문항에서는 '종류별 이미지 수 → 접수처의 포함·제외 → 권리자 동의서 → 신청서 보관기간' 순서로 수치와 범위를 분리해 판단한다. 선지 앞부분이 맞아도 마지막 기간이나 괄호 속 예외가 틀리면 선지 전체는 X이다.

암기 포인트

기본형 이미지 1종, 홍보형·시트형 큰 이미지 1종 추가 무료, 별정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 신청서 보관 1년이다.

NoteBase

7. <보기>에서 요금별납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취급할 수 있는 최저수량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다르다.
ㄴ.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우편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ㄷ. 요금별납 고무인은 담당자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관, 사용한다.
ㄹ. 1개월간 발송 예정인 우편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받는다.
ㅁ. 우편물의 종별, 중량, 우편요금 등이 같고 동일인이 동시에 발송하는 우편물이어야 한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요금별납 우편물의 이용 수량, 접수 시간, 요금별납인 관리 주체와 요금후납 담보금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의 기준을 섞지 않고, '2배'와 '2배 이상'처럼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까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요금별납은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요금의 우편물을 한꺼번에 다량 발송할 때 개별 우표 대신 요금별납 표시를 하고 요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요금후납은 일정 기간 이용한 우편요금을 나중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우편요금 등 납부의 특례 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요금별납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모두 10통 이상이 기본 이용 수량이다. 「우편업무 규정」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르면 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수수하며, 우편물은 원칙적으로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접수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 따른 요금후납 담보는 1개월분 예상 우편요금 등의 2배 이상이다. 따라서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 ㄹ)
ㄱ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최저수량이 다르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두 종류 모두 10통 이상이 기본 기준이다. ㄹ은 담보금을 예상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하여 틀리다. 요금후납 담보는 1개월분 예상 우편요금 등의 2배 이상이다.
틀린 표현: '최저수량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다르다',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올바른 표현: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 모두 10통 이상이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② O (ㄴ, ㅁ)
ㄴ은 요금별납 우편물을 원칙적으로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에 접수한다는 기준과 일치한다. 다만 일간신문은 시간 외 접수가 가능하다. ㅁ은 같은 사람이 동시에 발송하고 우편물의 종별·중량·통당 요금이 같아야 한다는 접수 확인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ㄱ, ㄷ, ㅁ)
ㅁ은 맞지만 ㄱ과 ㄷ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의 최저수량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이 모두 10통 이상이다. ㄷ의 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수량을 파악하여 보관하고, 담당자는 사용할 때마다 책임자에게 받아 사용한다.
틀린 표현: '최저수량은 서로 다르다', '담당자가 보관·사용한다'
올바른 표현: '최저수량은 두 종류 모두 10통 이상이다', '책임자가 보관하고 담당자는 사용할 때마다 수수한다'

④ X (ㄴ, ㄷ, ㄹ)
ㄴ은 맞지만 ㄷ과 ㄹ이 틀리므로 옳은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보관하며, 요금후납 담보는 1개월분 예상 우편요금 등의 정확히 2배가 아니라 2배 이상이다.
틀린 표현: '담당자가 보관·사용한다',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올바른 표현: '책임자가 보관하고 담당자는 사용할 때마다 수수한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는 '사용하는 사람'과 '보관 책임자'를 같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쉽다. ㄹ에서는 '2배'와 '2배 이상'을 같다고 보면 틀린다. 또한 ㄹ은 요금별납이 아니라 요금후납의 담보 기준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요금별납 문제에서는 먼저 10통 이상, 같은 사람의 동시 발송, 종별·중량·통당 요금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그다음 접수는 창구업무 취급시간 내가 원칙인지, 요금별납인은 책임자가 보관하는지, 후납 담보 문구가 '2배 이상'인지 순서대로 대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별납은 둘 다 10통, 별납인은 책임자 보관, 후납 담보는 2배 이상이다.

NoteBase

8. 우편요금 감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리점, 영업사원, 보급대행인, 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대상이다.

②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 우편물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20kg을 초과한 소포 1개를 2개로 분할(1개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할 것)하여 접수한 등기소포 우편물은 1,000원이 감액된다.

④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등기 통상우편물은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물 종류별 요금 감액 대상과 감액 요건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정기간행물의 발송 주체, 서적우편물의 광고 면적, 고중량 소포의 분할접수 감액액, 등기통상우편물의 감액 적용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요금 감액은 발송 주체, 우편물의 내용과 형식, 접수 물량·방법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 우편물의 요금을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 낮추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현행 국내우편 안내상 서적우편물은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면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중량 소포 분할접수는 분할 전 20 ~ 30*kg* 소포 요금을 기준으로 3,000원을 감액하며, 등기통상우편물의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함께 적용하는 것은 일정 물량 이상의 선택등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영업사원·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틀린 표현: '감액대상이다'
올바른 표현: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점·영업사원·개인 등이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O
상품의 선전 및 광고가 전 지면의 10%를 초과하는 서적우편물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10% 이하는 허용되고, 10%를 초과할 때 제외된다는 경계를 정확히 본다.

③ X
20*kg*을 초과한 소포 1개를 각각 10*kg*을 초과하도록 2개로 나누고 접수시각·발송인·수취인이 같은 경우, 분할 전 20 ~ 30*kg* 고중량 소포 요금을 기준으로 감액되는 금액은 1,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다.
틀린 표현: '1,000원이 감액된다'
올바른 표현: '분할 전 20 ~ 30*kg* 고중량 소포 요금을 기준으로 3,000원이 감액된다.'

④ X
1회 10통 이상인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등기는 접수방법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접수물량 감액까지 동시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접수물량 감액은 선택등기를 1회 100통 이상 접수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이때 접수방법 감액과 동시에 적용된다.
틀린 표현: '일반등기통상우편물은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올바른 표현: '선택등기통상우편물을 1회 100통 이상 접수하면 접수방법 감액과 접수물량 감액을 동시에 적용받는다.'

오답 포인트

②의 '10%를 초과'와 '10% 이상'을 혼동하거나, ③의 예전 감액액을 그대로 기억하거나, ④에서 일반등기와 선택등기의 물량 감액 요건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경계 표현인 '초과'는 10%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감액 문항은 '누가 발송하는가 → 어떤 우편물인가 → 최소 물량과 접수방법은 무엇인가 → 감액률·감액액은 얼마인가'의 순서로 판단한다. 비율은 초과·이상 여부를, 등기통상은 일반등기·선택등기 구분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서적 광고는 10% 초과 시 제외, 고중량 소포 분할은 3,000원, 물량 감액 동시 적용은 100통 이상 선택등기이다.

NoteBase

9.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 해지 시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다.

②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③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우체국장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의 열쇠 처리, 단체 수령인 등록, 계약 해지 사유 및 운영 실태 점검 횟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사용계약 해지 사유와 우체국장의 사서함 관리 의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우편사서함 사용계약은 이용자가 우체국장과 계약하여 우체국에 설치된 사서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이다. 우편물 수령인은 단체의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도록 등록된 사람이며, 사서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약자와는 다르다.

핵심 구분

우편법 시행규칙상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열쇠를 2개 이상 교부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서함 우편물을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우체국장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인·공공기관 등 단체는 우편물 수령인을 5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사서함을 운영하는 관서의 우체국장은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사용계약이 해지되어도 사서함 열쇠는 반납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② O
법인·공공기관 등 단체는 우편물 수령인을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므로 옳다. 이는 사서함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③ O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계약우체국장은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X
운영 실태 점검 횟수를 잘못 제시하였다.
틀린 표현: 연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올바른 표현: 연 2회 이상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연 1회 이상'을 익숙한 정기점검 주기로 보고 지나치기 쉽다. 우편사서함 관리의 점검 주기는 연 2회 이상이며, 점검과 함께 사용계약 해지 대상자 등도 정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편사서함 문항에서는 사람 수, 기간, 횟수를 먼저 표시하여 판단한다. 단체 수령인은 5명까지, 미수령 해지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운영 실태 점검은 연 2회 이상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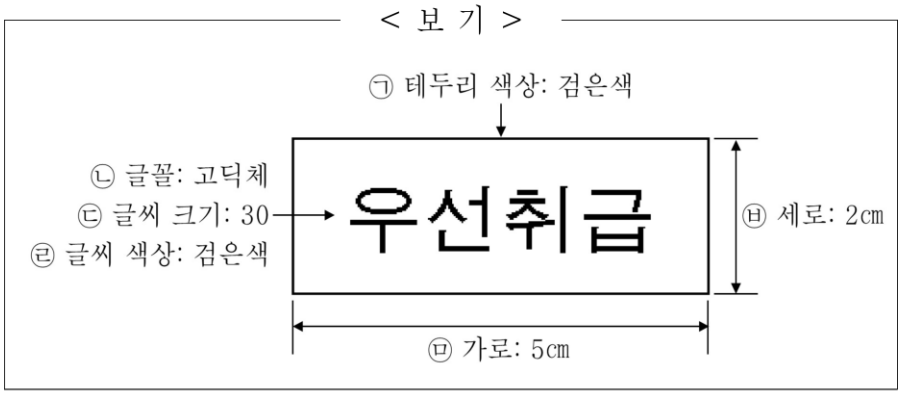
암기 포인트

사서함 핵심 숫자는 '수령인 5명·미수령 30일·점검 연 2회'이다.

NoteBase

10. <보기>의 '우선취급' 표시 규격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ㅁ, ㅂ
④ ㄷ, ㅁ, ㅂ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잘못 도착한 우편물에 하는 '우선취급' 표시의 글꼴·글자 크기·색상·크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옳은 항목만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선취급 표시는 잘못 도착한 우편물을 최선편으로 보내기 위해 우편물 표면의 '우체국 사용란'에 하는 표시이다. 표시 사양은 고딕체 32, 가로 5*cm*, 세로 2*cm*이며, 글씨와 테두리 색상은 모두 붉은색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옳은 항목은 ㄴ·ㅁ·ㅂ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테두리 색상: 검은색'과 ㄹ의 '글씨 색상: 검은색'이 틀렸다. 글씨와 테두리는 모두 붉은색이며, 옳은 항목의 조합은 ㄴ · ㅁ · ㅂ이다.

② X
ㄱ의 검은색 테두리, ㄷ의 글씨 크기 30, ㄹ의 검은색 글씨가 모두 틀렸다. 실제로는 붉은색 테두리와 붉은색 글씨를 사용하고 글씨 크기는 고딕체 32이며, 옳은 조합은 ㄴ · ㅁ · ㅂ이다.

③ O
ㄴ의 고딕체, ㅁ의 가로 5*cm*, ㅂ의 세로 2*cm*는 모두 우선취급 표시 사양과 일치한다.

④ X
ㅁ과 ㅂ은 맞지만 ㄷ의 '글씨 크기: 30'이 틀렸다. 글씨 크기는 고딕체 32이므로 ㄷ 대신 ㄴ을 골라 ㄴ · ㅁ · ㅂ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보기의 도식이 검은색으로 인쇄되어 있어 ㄱ과 ㄹ도 맞는 규격처럼 보이게 만든 점이 함정이다. 실제 사양의 글씨와 테두리는 붉은색이고, 글씨 크기도 30이 아니라 고딕체 32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선취급 표시 사양을 '고딕체 32 · 붉은 글씨와 붉은 테두리 · 가로 5*cm* · 세로 2*cm*'의 네 요소로 나누어 보기의 각 표기와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우선취급은 '고딕 32, 빨강, 5×2'로 기억한다.

NoteBase

11. 집배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 문자와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②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이루어져 있다.

③ 도착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는 경인청 우편집중국의 경우 'B'로 시작한다.

④ 배달국 번호의 마지막 자리는 청번호를 의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집배코드의 정의와 9자리 구성, 도착집중국 약호 및 배달국 번호가 나타내는 정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나타낸 코드이다. 전체 9자리는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로 구성된다. 배달국 번호 3자리에서는 첫 자리가 청번호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집배코드는 우편물의 구분·운송·배달에 필요한 구분정보를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문자와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② O — 집배코드는 도착집중국 2자리, 배달국 3자리, 집배팀 2자리, 집배구 2자리의 순서로 이루어진 총 9자리 코드이다.
③ O — 도착집중국 약호는 소속 지방우정청을 구별하며, 경인청 소속 우편집중국의 약호는 'B'로 시작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마지막 자리'이다. 배달국 번호에서 청번호를 뜻하는 것은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첫 자리이다. 올바르게는 '배달국 번호의 첫 자리는 청번호를 의미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도착집중국 약호의 첫 자리와 배달국 번호의 첫 자리를 혼동하기 쉽다. ③은 경인청의 도착집중국 약호가 B로 시작한다는 설명이고, ④는 배달국 번호에서 청번호가 놓이는 위치를 마지막 자리로 바꾼 설명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집배코드를 2-3-2-2로 나누어 도착집중국-배달국-집배팀-집배구에 대응시킨다. 그다음 자리의 의미를 묻는 선지에서는 배달국 번호의 첫 자리가 청번호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집배코드는 2-3-2-2, 배달국 3자리의 첫 자리는 청번호이다.

NoteBase

12. 우체통에서 수집한 우편물의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수집해온 우편물을 소인 작업에 편리하도록 종류와 형태별로 분류한 후에 우표나 요금인 면을 바르게 간추려 ()에 날짜도장을 찍는다.

(나) 국제우편물에는 국제날짜도장을 찍으며, 항공우편물은 () (으)로, 선편우편물은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한다.

(다) 부가취급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인 우편물은 () 표시 후 우편창구에서 접수 처리한다.

	(가)	(나)	(다)
①	우표 면	국제우편물류센터	'취급 중 발견'
②	우표 면	인천해상교환우체국	'취급 중 발견'
③	수취인 성명	국제우편물류센터	'우선취급'
④	수취인 성명	인천해상교환우체국	'우선취급'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편물 소인 작업의 날짜도장 위치, 국제우편물의 운송편별 발송 관서, 부가취급 우표가 붙은 우편물의 표시를 정확히 짝짓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인 작업은 우표나 요금인 면에 날짜도장을 찍어 접수 사실을 나타내고 우표의 재사용을 막는 처리이다.
국제우편물은 운송편에 따라 발송 경로가 구분되어, 항공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내고 선편우편물은 부산국제우체국으로 발송한다.
부가취급 우표가 붙은 우편물은 취급 과정에서 확인되면 '취급 중 발견'으로 표시한 뒤 우편창구에서 접수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우표 면', (나)는 '국제우편물류센터', (다)는 '취급 중 발견'으로 세 항목이 모두 맞게 연결되어 있다.
② X — (나)의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항공우편물을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보낸다.
③ X — (가)의 '수취인 성명'과 (다)의 '우선취급'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우표나 요금인 면에 날짜도장을 찍고, 해당 우편물에는 '취급 중 발견'이라고 표시한다.
④ X — (가)의 '수취인 성명', (나)의 '인천해상교환우체국', (다)의 '우선취급'이 모두 틀렸다. 올바른 짝은 각각 '우표 면', '국제우편물류센터', '취급 중 발견'이다.

오답 포인트

'인천해상교환우체국'이라는 명칭 때문에 항공우편물의 발송 관서로 착각하거나, 부가취급 우표를 '우선취급' 표시와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보기의 기준에서는 항공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가취급 우표가 붙은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 표시로 구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 빈칸을 따로 판정한다. 날짜도장은 우표·요금인 면, 항공 국제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가취급 우표 발견 우편물은 '취급 중 발견'으로 연결한 뒤 세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선지를 고른다.

암기 포인트

소인은 우표 면, 항공은 국제우편물류센터, 부가취급 우표 발견은 '취급 중 발견'이다.

NoteBase

13.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의 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급한도액은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이다.

②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 기프트카드 등의 보험취급을 원할 경우, 유가증권 등기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다.

③ 배달 시에는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게 한 후, 표기된 유가증권 증서류명, 금액,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확인한다.

④ 관공서, 회사 등에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이 포함된 다량의 등기우편물 배달 시 상호 대조 및 확인 없이 일괄배달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유가증권 등기우편물의 취급 대상·한도액과 배달 시 확인 절차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사용하지 않은 유가증권과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기프트카드의 접수 방법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유가증권등기 = 현금과 교환할 수 있는 수표·우편환증서·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직접 배달하고, 분실·훼손 시 봉투 표면에 기록된 금액을 배상하는 보험취급 제도이다.
물품등기 = 귀중품이나 주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신고한 물품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배달하는 보험취급 제도이다.

핵심 구분

우정사업본부의 2026년 우편일반 학습교재에 따르면 유가증권등기는 액면 또는 권면가액이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인 유가증권을 취급한다. 다만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나 기프트카드는 유가증권등기로 취급할 수 없고 물품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 배달할 때에는 수취인이 겉봉을 열어 증서류명·금액·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다량의 등기우편물 속에 포함된 경우에도 상호 대조 없이 일괄 배달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가증권등기의 취급한도액은 액면 또는 권면가액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옳다.

② X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와 기프트카드는 유가증권등기의 취급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틀린 표현: 유가증권 등기우편물 접수가 가능하다.
올바른 표현: 유가증권등기로는 취급할 수 없고 물품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

③ O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배달할 때에는 수취인에게 겉봉을 열어 확인하게 한 뒤 봉투에 표기된 유가증권의 증서류명·금액·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확인하므로 옳다.

④ O
관공서나 회사에 다량의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더라도 그 안의 유가증권등기우편물을 상호 대조·확인 없이 일괄 배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함정은 '보험취급을 원한다'는 말만 보고 모든 가치 있는 증표를 유가증권등기로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데 있다. 이미 사용된 유가증권류·기프트카드는 유가증권등기가 아니라 물품등기의 대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증표가 현금과 교환되는 미사용 유가증권인지, 이미 사용되었거나 기프트카드처럼 물품으로 취급해야 하는 대상인지 확인한다. 미사용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등기, 사용된 유가증권류·기프트카드는 물품등기로 구분한다. 배달 단계에서는 겉봉 개봉 후 내용 대조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유가증권등기 10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사용된 증권·기프트카드는 물품등기이다.

NoteBase

14. <보기>의 특별송달 우편물 배달 사례에 맞는 송달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가) 우편물 표면에 기록된 주소지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하였다.
(나) 수취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우편물을 두고 왔다.
(다)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송달하였다.
(라) 우편물에 표기된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이 외출 중이라 그 동거인에게 송달하였다.

	(가)	(나)	(다)	(라)
①	교부송달	유치송달	조우송달	보충송달
②	교부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조우송달
③	보충송달	조우송달	교부송달	유치송달
④	보충송달	유치송달	교부송달	조우송달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특별송달 우편물의 배달 상황을 교부송달·유치송달·조우송달·보충송달과 정확히 대응시키는 문제이다. 핵심은 배달 장소, 실제 수령인, 수령 거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교부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에서 수취인 본인에게 직접 우편물을 건네는 송달이다.
조우송달은 우편물에 표시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수취인 본인을 만나 직접 건네는 송달이다.
보충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수취인 본인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동거인 등 적법한 수령대행인에게 건네는 송달이다.
유치송달은 수취인 또는 적법한 수령대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할 때 송달장소에 우편물을 두는 송달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178조에서 수취인 본인에 대한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제183조에서 송달장소와 송달장소 밖에서 만난 경우를 정하며, 제186조에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을 규정한다. 따라서 (가)는 주소지에서 본인에게 건넸으므로 교부송달, (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 후 송달장소에 두었으므로 유치송달, (다)는 표시된 주소지가 아닌 우체국 창구에서 본인에게 건넸으므로 조우송달, (라)는 주소지에서 본인 대신 동거인에게 건넸으므로 보충송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 교부송달, (나) 유치송달, (다) 조우송달, (라) 보충송달로 네 사례가 모두 올바르게 대응한다.

② X
(가)의 교부송달은 맞지만 나머지 대응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나) 보충송달, (다) 유치송달, (라) 조우송달'이다. 올바른 표현은 '(나) 유치송달, (다) 조우송달, (라) 보충송달'이다. 수령 거부 후 두고 오는 것은 유치송달이고, 송달장소 밖에서 본인에게 건네는 것은 조우송달이며, 동거인에게 건네는 것은 보충송달이다.

③ X
네 대응이 모두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 보충송달, (나) 조우송달, (다) 교부송달, (라) 유치송달'이다. 올바른 표현은 '(가) 교부송달, (나) 유치송달, (다) 조우송달, (라) 보충송달'이다.

④ X
(나)의 유치송달은 맞지만 나머지 대응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 보충송달, (다) 교부송달, (라) 조우송달'이다. 올바른 표현은 '(가) 교부송달, (다) 조우송달, (라) 보충송달'이다.

오답 포인트

'본인이 받았다'는 사실만 보고 (다)를 교부송달로 고르기 쉽다. 교부송달과 조우송달은 수령인이 모두 본인이지만, 우편물에 표시된 주소지 등 송달장소에서 받으면 교부송달이고 송달장소가 아닌 우체국 창구 등에서 만나 받으면 조우송달이다. 또한 수령 거부 후 놓아두는 유치송달과 동거인에게 대신 건네는 보충송달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실제 수령인이 본인인지 동거인 등 수령대행인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배달 장소가 표시된 송달장소인지 그 밖의 장소인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교부·조우·보충·유치송달을 구별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주소지의 본인은 교부, 주소지 밖에서 만난 본인은 조우, 동거인 등 대행인은 보충, 수령 거부 후 놓아두면 유치이다.

NoteBase

15. 다음의 우정당국들이 가입한 국제연합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특송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 및 EMS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사무국은 태국에 소재하고 있다.

② 연합체의 역할 확대를 위해 최근 K-Packet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③ 슬로건은 'The Passion to Deliver'이다.

④ 약속한 날짜보다 하루라도 지연 배달될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해주는 고품질 서비스를 운영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그림에 제시된 여러 국가 우정사업자의 로고를 보고 카할라 우편연합체(Kahala Posts Group, KPG)를 식별한 뒤, 설립 목적·주력 서비스·슬로건·배달보장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국제특송 시장에서 회원 우정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은 맞지만, '사무국은 태국에 소재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카할라 우편연합체의 본부·사무국 소재지는 홍콩이다.

② X

'K-Packet 등 여러 상품을 주력 우편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카할라 우편연합체가 공동으로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대상은 EMS를 비롯한 국제특송·소포 서비스이며, K-Packet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2 kg 이하 국제 소형물품 배송 서비스이다.

③ X

슬로건의 'Passion'이 틀렸다. 올바른 슬로건은 'The Power to Deliver'이다.

④ O

카할라 우편연합체의 배달보장서비스는 약속한 배달기한을 넘기면 우편요금을 환급하는 품질보장 방식이다. 따라서 하루라도 지연 배달된 경우 우편요금을 배상한다는 설명이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설립 목적이 맞아 보여 전체 문장을 옳다고 판단하기 쉽고, ③은 Power와 Passion이 비슷한 긍정적 표현이라 혼동하기 쉽다. 복합 선지는 문장 일부만 맞아도 전체는 X이며, 슬로건은 ‘Power’라는 정확한 단어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ustralia Post·China Post·Japan Post·Korea Post·USPS 등 여러 국가 우정사업자 로고가 함께 제시되면 카할라 우편연합체를 먼저 떠올린다. 이어 ‘EMS 경쟁력 향상, 홍콩 소재, The Power to Deliver, 배달기한 초과 시 요금 환급’의 네 기준으로 선지를 판별한다.

암기 포인트

카할라 우편연합체는 ‘EMS 품질 향상·홍콩·Power·지연 시 요금 환급’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6. 국제소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접수검사 시 중계국가와 우리나라의 소포 교환 여부,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보통소포의 경우에는 기록 취급하지 않으나 등기취급을 부가할 경우, 기록 취급이 가능하다.

③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기표지(운송장)에는 도착 국가명, 중량, 요금 등을 접수담당자가 기재한다.

④ 항공소포는 실중량(Actual weight) 산정을 위해 우편물의 가로(cm), 세로(cm), 높이(cm)를 주소기표지(운송장)에 기재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제소포의 접수검사 대상, 기록취급 방식, 주소기표지의 작성 주체, 실중량과 부피중량의 구분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제소포는 만국우편연합의 소포우편규칙에 따라 우정당국 사이에서 교환되는 국제우편 서비스이다. 접수할 때에는 우리나라와 도착국가의 소포 교환 여부 및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하며, 국제소포는 국내 구간에서 기본적으로 기록취급한다. 주소기표지는 발송인이 기본 정보를 작성해 제출하지만, 도착국가명·중량·요금·접수우체국명·접수일자 등 접수 사항은 접수담당자가 명확히 기재한다. 항공소포는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비교하여 큰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중계국가와 우리나라'이다. 접수검사에서는 우리나라와 도착국가의 소포 교환 여부 및 접수 중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보통소포는 기록취급하지 않으나 등기취급을 부가하면 기록취급이 가능하다'이다. 국제보통소포는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기록취급하므로, 별도의 등기취급을 붙여야만 기록취급되는 것이 아니다.

③ O — 발송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주소기표지에는 도착국가명, 중량, 요금, 접수우체국명 및 접수일자 등 접수 사항을 접수담당자가 기재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실중량 산정을 위해 가로·세로·높이를 기재한다'이다. 실중량은 저울로 측정하고, 가로·세로·높이는 부피중량 산정을 위해 기재한다. 항공소포는 실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을 요금 적용 중량으로 삼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주소기표지 전체를 접수담당자가 작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발송인이 기본 정보를 작성해 제출한 뒤 접수담당자가 도착국가명·중량·요금 등 접수 사항을 보완한다는 역할 구분이 핵심이다. 또한 ④의 치수는 실중량이 아니라 부피중량과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수검사는 '우리나라와 도착국가'를 기준으로 보고, 국제소포는 국내에서 기본적으로 기록취급한다고 판단한다. 무게 관련 선지에서는 저울로 재는 것은 실중량, 가로·세로·높이로 계산하는 것은 부피중량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교환 여부는 도착국가, 국제소포는 국내 기본 기록, 치수는 부피중량, 접수 사항은 접수담당자이다.

NoteBase

17. 국제우편 보험취급(Insur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이 가능하다.

② 보험취급한 통상우편물을 등기보험서장(Insured Letter)이라 한다.

③ 중요서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귀중품은 보험소포로 접수를 권유한다.

④ 국제우편물 발송조건(포스트넷·인터넷우체국)에서 취급국가 및 보험가액 최저한도액을 확인하여 접수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제우편 보험취급의 정식 명칭, 접수 우체국, 권장 대상 및 접수 전 확인사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험취급한 통상우편물은 등기보험서장(Insured Letter)이라고 한다. 등기보험서장은 발송인이 신고한 가액에 따라 보험취급하며, 망실·도난·파손이 발생하면 보험가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국제우편 특수취급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등기보험서장은 보험취급이 가능한 우체국에서 접수해야 하므로,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O — 보험취급한 통상우편물을 등기보험서장(Insured Letter)이라고 하므로 옳다.

③ X — 중요서류나 유가증권 등 부피가 작은 귀중품에는 보험소포가 아니라 등기보험서장으로 접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X — 접수 전에 국제우편물 발송조건에서 취급 국가와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을 확인해야 한다. '최저한도액'이라는 부분이 옳지 않다.

오답 포인트

①은 보험취급이 가능한 접수 우체국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고, ③은 부피가 작은 중요서류·유가증권의 권장 취급을 보험소포로 잘못 제시했다. ④는 확인해야 할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을 최저한도액으로 바꾼 선지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우편 보험취급 문제에서는 우편물의 종류와 공식 명칭을 연결해 판단한다. 보험취급한 통상우편물은 등기보험서장이며, 접수 전에는 국가별 취급 여부와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보험취급 통상우편물은 등기보험서장, 부피가 작은 중요서류·유가증권도 등기보험서장, 접수 전 확인 대상은 보험가액 최고한도액이다.

NoteBase

18. 국제우편 사전 통관정보 제공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국가가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반드시 도착국가 세관의 승인 완료(AC: Assessment Complete)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

② 우편물에 부착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 및 세관신고서의 작성 언어는 영어이며 포스트넷에 숫자 이외의 문자는 모두 영문으로 입력한다.

③ 대상 우편물은 국제소포우편물, K-Packet, EMS(서류·비서류), 한중해상특송우편물, 소형포장물이다.

④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실시 중이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사전 통관정보 제공 제도의 적용 대상, 정보 입력 방식, 접수 관서와 운송수단 탑재 요건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도착국의 승인 완료(AC)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있어야만 발송할 수 있는 요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전 통관정보 제공 제도 = 국제우편물이 도착국에 도착하기 전에 발송인·수취인·내용품 등의 통관정보를 전자적으로 보내 세관이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AC(Assessment Complete) = 도착국 관계 기관의 사전 위험평가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응답이다.

핵심 구분

사전 통관정보를 전송하는 의무와 AC를 반드시 수신해야만 탑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서로 다르다. UPU의 WCO–UPU 전자적 사전정보(EAD) 지침에 따르면, AC가 수신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대기시간이 지나고 추가자료 요구(RFI), 검색 요구(RFS), 탑재금지(DNL) 등의 통지가 없으면 탑재 가능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AC를 받은 경우에만'이라는 절대적 표현은 옳지 않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대상국가가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부분과 별개로, 도착국 세관의 AC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언제나 운송수단 탑재와 발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정 시간 동안 별도의 조치 요구나 탑재금지 통지가 없으면 발송할 수 있다.
- 틀린 표현: '반드시 도착국가 세관의 승인 완료(AC)를 받은 경우에만 운송수단 탑재 및 발송이 가능하다.'
- 올바른 표현: '사전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통지를 확인하되, AC가 수신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대기시간이 지나고 추가자료 요구·검색 요구·탑재금지 통지가 없으면 운송수단에 탑재하여 발송할 수 있다.'

② O
- 국제우편물에 붙이는 주소기표지와 세관신고서는 영어로 작성하며, 포스트넷에는 숫자를 제외한 문자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이는 도착국 우정·세관 시스템이 통관정보를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준이다.

③ O
- 사전 통관정보 제공 대상에는 국제소포우편물, K-Packet, EMS의 서류·비서류, 한중해상특송우편물 및 소형포장물이 포함된다. 물품을 담은 우편물뿐 아니라 EMS 서류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④ O
- 이 제도에 따른 국제우편 접수는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우편취급국을 제외한다고 보면 틀린 판단이 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앞부분인 'UPU 회원국 전체로 확대'가 맞다는 이유만으로 선지 전체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뒤의 'AC를 받은 경우에만'은 AC 미수신 뒤에도 일정 조건에서 탑재할 수 있는 예외를 지운 절대적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전 통관정보 문항에서는 대상 우편물, 입력 언어, 접수 관서, 세관 응답에 따른 조치를 나누어 판단한다. 특히 '반드시', '오직', '경우에만'이 보이면 AC 외의 응답과 무응답 후 처리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영문 입력·전 우체국 접수·대상 우편물 확대는 맞고, 'AC가 있어야만 발송'은 틀리다.

NoteBase

19.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Food & Drug Administration)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u>않은</u> 것은?

① 항공 및 선편우편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전신고는 '면제', '유예', '해당'으로 구분된다.

③ FDA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한 후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한다.

④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식품반입 시 FDA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미국행 식품 우편물의 FDA 사전신고 적용 범위와 신고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사전신고의 면제·유예·해당 구분과 신고 가능한 수단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FDA 사전신고 =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입을 위해 제시되는 식품에 관하여 발송 전에 FDA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이다.

유예 = 사전신고 대상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비상업적 개인 간 발송에 대해서는 신고 누락 시 법 집행을 완화하는 경우를 뜻한다.

핵심 구분

현행 FDA 규정인 21 CFR Part 1 Subpart I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람용·동물용 식품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며, 국제우편 식품은 FDA의 PNSI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한다. 인터넷우체국 안내도 가정에서 제조한 비상업적 식품은 면제,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비상업적 식품은 원칙적 신고 대상이지만 법 적용 완화, 그 밖의 신고 대상 식품은 사전신고 해당으로 구분한다. 우편이나 전화는 신고 수단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미국행 식품 국제우편물의 사전신고 제도는 항공우편과 선편우편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식품의 성격과 발송 목적에 따라 면제 또는 법 적용 완화가 인정될 수 있다.

② O
우편 실무상 식품 사전신고 적용 여부는 '면제', '유예', '해당'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만든 비상업적 식품은 면제, 개인 간 비상업적 발송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법 적용이 완화되는 유예, 개인이 회사로 보내거나 회사 간에 보내는 식품은 신고 해당에 속한다.

③ X
FDA 사전신고 사이트에서 계정을 개설한 뒤 인터넷으로 신고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한다'는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인터넷,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한다.
올바른 표현: 국제우편 식품은 FDA PNSI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하며, 우편이나 전화로는 신고할 수 없다.

④ O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미국으로 반입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FDA 사전신고 대상이다. 사전신고가 없거나 부적절하면 정상 배달되지 않고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은 'FDA 사이트에서 계정을 먼저 개설한다'는 맞는 내용 뒤에 '우편,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는 틀린 내용을 붙인 선지이다. 신고 절차의 앞부분만 보고 전체 선지를 옳다고 판단하기 쉽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고 방법을 묻는 선지에서는 'FDA 사이트 접속 → 계정 개설 → PNSI 전자신고 → 확인번호 획득 → 우편물 접수'의 흐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우편·전화 신고가 가능하다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FDA 식품 사전신고는 우편·전화가 아니라 PNSI 전자신고이다.

NoteBase

20. 국제우편 소형포장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편물에 굵은 글씨로 소형포장물을 나타내는 'Small parcel' 또는 'Petit paquet'를 표시한다.

② 우편물의 내부나 외부에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③ 등기소형포장물의 경우, 고객이 편리하게 국제우편스마트접수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요금할인은 없다.

④ 세관신고서는 내용품의 가격에 따라 300SDR을 기준으로 CN22 또는 CN23을 이용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의해 1SDR은 현재 1,450원이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국제우편 소형포장물의 외부 표시, 허용되는 기재사항, 스마트접수 요금감액, 세관신고서 사용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SDR(특별인출권)은 국제우편의 손해배상액·보험가액·세관신고 기준 등에 사용하는 국제적 계산 단위이다. CN22는 비교적 낮은 가격의 내용품에 붙이는 세관표지이고, CN23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내용품에 사용하는 세관신고서이다.

핵심 구분

현행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상 소형포장물의 표시는 'petit paquet' 또는 'small packet'이다. 소형포장물에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통신문 관련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이면 CN22, 300SDR를 초과하면 CN23을 사용한다. SDR의 원화 환산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환율을 적용하며, 현행 고시상 1SDR은 1,75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소형포장물의 영문 표시는 ‘small parcel’이 아니라 ‘small packet’이다. 프랑스어 표시는 ‘petit paquet’이다.
- 틀린 표현: ‘Small parcel’
- 올바른 표현: ‘small packet’

② O
- 소형포장물의 내부나 외부에는 발송인과 수취인 사이에 교환되는 통신문에 관한 참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X
- 등기소형포장물은 국제우편 스마트접수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또는 우체국 앱 접수에 따른 요금감액도 적용될 수 있다.
- 틀린 표현: ‘이에 따른 요금할인은 없다’
- 올바른 표현: 스마트접수에 따른 요금감액이 있으며, 현행 감액 기준상 계약 고객은 3%p 이하, 비계약 고객은 5%p의 접수비용 절감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X
- 300SDR 이하에는 CN22, 300SDR 초과에는 CN23을 사용하는 구분은 맞지만, 1SDR을 1,450원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 틀린 표현: ‘1SDR은 현재 1,450원이다’
- 올바른 표현: 현행 우정사업본부 고시상 1SDR은 1,750원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parcel’과 ‘packet’을 비슷한 뜻으로 보고 넘기거나, ③에서 스마트접수의 편의성만 떠올려 감액 제도를 놓치기 쉽다. ④는 CN22와 CN23의 300SDR 경계가 맞더라도 뒤의 SDR 환산액이 틀리면 선지 전체가 X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형포장물 문제에서는 표시 문구, 기재 가능 사항, 접수 방식별 감액, CN22·CN23의 가격 경계, SDR 환산액을 각각 분리해 판단한다. 한 선지에 기준과 금액이 함께 제시되면 두 부분을 모두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소형포장물은 small packet, 300SDR 이하는 CN22·초과는 CN23, 스마트접수는 감액 가능이다.

NoteBase